

제재내용 공시

1. 조합명 : 강원고성군수협

2. 제재조치(요구)일 : 2026. 03. 04.

3. 제재조치(요구)내용

제재대상	제재내용
직원	변상(3명), 견책(1명), 경고(1명)

※ 향후 관련 내규 등에 따른 이의신청(재심) 처리결과에 따라 제재조치 내용이 변동될 수도 있음

4. 제재대상 사실

신용대출 취급 부적정

- 신용대출 취급 시 차주가 납부한 최근 3개월간 건강보험료 가입 종류가 달라 소득 추정이 불가함에도 건강보험료로 소득을 추정하여 신용대출을 취급하였음.

영업점장 특인대출 취급 부적정

- 영업점장 특인대출을 추가로 취급할 수 없는 상황에도 대출을 추가 취급하였으며, 영업점장 특인대출 기취급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대출을 승인하였음.

< 관련법규 >

- 「상호금융 여신업무방법」제1편 제80-3조(대출한도 산출)
- 「상호금융 여신업무방법」제2편 제18조(한도전략), 제36조(연소득 산정방식)
- 한국주택금융공사 「보금자리론 업무처리기준」
- 「회원조합 감사규정」 제31조(직원에 대한 제재), 제32조(기타 조치)
- 「회원조합 징계·변상업무처리규정」제12조(징계양정기준) <별표>징계양정기준표
- 「회원조합 징계·변상업무처리규정」제19조(변상책임의 발생 요건)부터 제23조(변상판정의 의결)